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16호

2021.9.15.(수)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8125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입법예고]

제2021-241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자치법규**[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125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1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 중 “시장비서실 소관 중 청년청에”를 “미래청년 기획단 소관에”로 하며, 같은 호 러목 중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관한”을 “시민협력국 소관에 속하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다목 중 “노동민생정책관”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3조제1항제8호가목 중 “도시재생실”을 “주택정책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건축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조직 개편 결과를 조례상에 반영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시민협력국'과 '미래청년기획단'을 추가하고,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삭제함(제33조제1항제2호).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중 '노동민생정책관'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을 추가함(제33조제1항제3호).
- 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주택정책실'과 '균형발전본부'를 추가하고, '도시재생실', '주택건축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지역발전본부'를 삭제함(제33조제1항제8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412호****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도계량기가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시험비용과 계량기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함(안 제16조의2제1항).

나. 제1항의 시험비용은 별표 12에 따름(안 제16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전화: 02)3146-1249, FAX: 02)3146-1209, E-mail: shsarang@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